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0. 3. 16.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3월 2일

· 회부일자 : 1999년 3월 2일

다. 상정 일자

○ 제159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1999. 4. 9) 상정, 질의답변, 유보

○ 제171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3. 16)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가. 제안 이유

농업인회관의 설치에 따라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 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회관은 농업기술원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함 (안 제3조)
회관의 용도는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 농업인단체사무실, 농업인단체사업지원,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 (안 제4조)
- 필요시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 (안 제6조)
- 회관 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회관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의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함 (안 제8조)
-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사업 위탁시 지도감독 및 수탁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노환)

-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을 설치 운영한다 함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형태이며,
- 제3조(운영관리) 회관의 운영관리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제3항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 재산관리관으로 관직 지정되어 있으며
- 제4조(용도)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조례로 용도를 규정함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제5조(사업의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 제6조(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88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

다”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4호(청사의 구내 재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중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근거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본 조례는 공유재산 즉 행정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로 규정하였으므로 동조례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원안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 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내에 둔다.

제3조(운영관리) 회관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운영관리 한다.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
2. 농업인단체 사무실(이 경우 농업인단체의 지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농업인단체의 사업지원(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각종 문화·축하행사, 농업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업의 위탁운영) 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에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다. 단, 위탁관리하였을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운영관리 책임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할 때 그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 회관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시설의 일시적 사용허가, 제한, 사용료 등의 반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 7일전까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시 또는 사용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시설 및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허가한 경우는 별표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8조(설비변상) ①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단체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 단체가 회관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원장은 회관을 사업위탁할 경우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구두보고토록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재산의 사용 기간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납입한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사용허가 잔여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규정한 사용료율로 재산정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

구 분	기 준	요 금	기준시간 초과요금 (시간당)	비 고
대강당	2시간	30,000	10,000	1시간 초과는 30분이상일 경우 가산
소강당	2시간	10,000	5,000	

관계법령 발췌

【농촌진흥법】 [1995. 12. 6 법률 제5020호 전문개정]

제2조(사업의 정의) ②이 법에서 “농촌지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2.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후계인력 육성
3.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
4. 제1항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기술의 보급
5. 지역 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7. 농작물의 품질 및 품위향상을 위한 지도
8.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 지도

③이 법에서 “교육훈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관련 사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농업산·학 협동”이라 한다)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 기술교육훈련
3. 농업인·농촌청소년·농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4.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 5. 전업농업인 및 농업인후계자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방재정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개정]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처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②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료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가격평정 및 대금납부 방법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84조(계약의 해제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 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다.

1. 잡종재산을 대부 받거나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그대부, 매수 또는 양수에 있어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용도를 지정하여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 매수자 또는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용도를 폐지한 때
3.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때
4.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할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1998. 7.16 대통령령 제15836호 개정]

제85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 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삭제(94. 9. 29)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유휴 잡종재산을 6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1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할 때
11.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를 대부할 때
12.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자투리부지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그 부지를 대부하는 때
13. 재산평가액이 1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14.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②잡종 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92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 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 평정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정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중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된 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만으로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광업·채석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재산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1995. 9. 22 조례 제2217호 개정]

제2조(관리책임) ②도지사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속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제3조(관리사무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조건)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